보고서 제목

# 목차

1. 개요

2. 본문

2-1. 목차 1

2-2. 목차 2

# 1. 개요

보고서 개요

# 2. 본문

## 2-1. 목차 1

# 1. 직장가입자  
  
## 1.1. 정의  
  
직장가입자는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 
  
## 1.2. 예시  
  
\* 국회의원, 대통령, 지방의회 의원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, 교육의원  
\* 상시근로자  
\*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
  
## 1.3. 예외  
  
\*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 
\*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
\*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
  
## 1.4. 판례  
  
\*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12461 판결: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,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의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해당한다.  
  
## 1.5. 참고 문헌  
  
\* 법 제6조 제2항 제2호  
\* 법 제74조 제1항  
\*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12461 판결

## 2-2. 목차 2

# 3. 직장가입자  
  
## 3.1. 정의  
  
직장가입자는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 
  
## 3.2. 적용대상  
  
### 3.2.1. 공무원  
  
공무원은 법 제3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관리된다.  
  
### 3.2.2.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 
  
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은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.  
  
### 3.2.3. 상시근로자  
  
상시근로자는 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.  
  
### 3.2.4.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 
  
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.  
  
## 3.3. 예외  
  
### 3.3.1.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
  
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적용제외자로 관리된다.  
  
### 3.3.2.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
  
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적용제외자로 관리된다